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7 선고 2015가합206269 판결 [매매대금 대위청구]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16. 11. 9.

판결 선고2016. 12.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2. 12. D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E 대 2225.9㎡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마친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중 495㎡(150평) 지분 상당을 양수받고, 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2000. 12. 14.까지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5. 2. 28. D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5477호로 위 약정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 10.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9. 10. 26. 접수 제133525호로 경료한 성남시 중원구 E 대 2225.9㎡의 2225.9분의 556.475 지분 중 2225.9분의 256.6 지분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 4. 12. 접수 제35909호로 경료한 같은 부동산의 11547분의 1239.675 지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12. 12.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D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07. 3. 19.경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2009. 10. 27. D와 사이에 D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E대 2225.9㎡ 중 D 지분전부 170.4평 및 F 대 1122.3㎡ 중 D 지분전부 85.9평을 매매대금 23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D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 11. 4.까지 잔금 2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21억 원의 잔금채권을 '이 사건 잔금채권'이라고 한다).

라. 피고들은 2009. 11. 6. 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E 대 2225.9㎡ 중 각 462996분의 58588 지분 및 F 대 1122.3㎡ 중 각 462996분의 58588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접수 제494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2009. 10. 28. G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1) 성남시 중원구 E 토지 중 495㎡(150평)은 원고의 소유임

2) 원고는 토지매매에 동의한다.

3) 원고는 토지매매를 위하여 성남시 중원구 E에 2003년 3월 7.일 경료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카합82호) 가처분권을 해지하여 준다.

4) 원고의 가처분을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G은 1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5) G과 D는 그동안 원고에게 입힌 피해보상금과 소송비용 등의 비용금 1억 원을 토지 대금 외 별도 선지급한다.

6) 토지 150평에 대한 지급 방법은 매매토지인 성남시 중원구 E, F 필지와 H, I, J 토지 매매 계약금 중에서 피해보상금 1억 원을 선지급해주고 원고 소유의 150평 토지매매대금 15억 원 중 8억 원은 H, I, J 토지 매매대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7억 원은 E, F 토지 잔금 받는 날 지급한다.

바. 원고는 2009. 11. 30.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H, I, K 토지의 매수인인 L, M으로부터 위 H, I, K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9억 원을 지급받았고, 2009. 11. 30.자 원고의 해제신청에 따라 2009. 12. 7. 성남시 중원구 E 대 2225.9m² 중 D 지분전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카합82호 가처분결정에 따라 마쳐진 2003. 3. 8.자 원고 명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등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3. 8. 접수 제10887호)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사. D는 2012. 5. 31. G과 사이에, G에게 D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잔금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2012. 6. 7.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아. G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1621호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잔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G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북광주세무서장, 이천세무서장, 성남세무서장이 2012. 7. 24.부터 2012. 9. 6.까지 순차로 G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잔금채권 전액을 압류하고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그 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G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위 각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인 피고들은 채권자(채권양수인)인 G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체납자인 G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그 압류된 채권인 이 사건 잔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G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14. 11. 21. G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1. 10.경 확정되었다.

자. 대한민국은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1673호로 이천세무서장의 2012. 8. 1.자 압류에 기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대한민국에게, 성남시 중원구 E 대 2225.9㎡ 중 D 소유권 1/4 지분 및 F 대 1122.3㎡ 중 D 소유권 1/4 지분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2카합2899호 가처분결정에 따라 마쳐진 2002. 10. 26.자 G 명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등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 10. 26. 접수 제75039호)가 말소되는 즉시 피고들은 각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대한민국과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차. 원고는 G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3925호로 사해행위로서 채무자인 D와 수익자인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원고와 G 사이에, G과 D 사이의 2012. 5. 31.자 21억 원의 채권양도계약(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7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함을 확인하고, G은 원고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G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카. G은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2016. 1. 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7억 원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잔금채권 중 7억 원을 D에게 다시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취소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발생한 원고의 D에 대한 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인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잔금채권 중 각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D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7. 3. 중순경부터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09. 11. 30.경 L, M(성남시 중원구 H, I, K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9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받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권리처분금지 가처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카합82호)에 대한 해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는바, D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D의 위와 같은 법률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D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D에 대한 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D는 원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E 대 2225.9㎡ 중 D 지분전부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들에게 성남시 중원구 E 대 2225.9㎡ 중 D 지분전부 및 F 대 1122.3㎡ 중 D 지분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결국 D의 원고에 대한 성남시 중원구 ㄷ 대 2225.9㎡ 중 D 지분전부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으로서 그 권리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09. 10. 28.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원고가 2009. 12. 7. 이 사건 합의에 따라 L, M으로부터 9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가등기에 경료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G으로부터 D의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받기 위하여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 앞서 본 합의내용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만으로는 D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채무자인 D는 G에게 이 사건 잔금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G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7억 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G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7억 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잔금채권 중 각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위에서 살핀 법리를 비추어 살펴보면, D의 G에 대한 이 사건 잔금채권 중 7억 원 부분의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D가 직접 이 사건 잔금채권 중 7억 원 부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대위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잔금채권 중 각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G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2015가합203925호로 받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D와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7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되,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G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자인 D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라 이 사건 잔금채권 중 7억 원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G의 피고들에 대한 2016. 1. 4.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취소통지는 대한민국(북광주세무서장, 이천세무서장, 성남세무서장)의 2012. 7. 24. 내지 2012. 9. 6.자 이 사건 잔금채권 압류보다 후순위이므로, D 및 G은 위 채권양도취소로서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여러모로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는 2002. 9. 26. 성남시 중원구 E, F, H, I, J 각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G에게 위 토지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G이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므로, G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G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09. 10.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G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채권 중 16억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건 합의)을 체결하였고, 2009. 1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채권 중 16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이 2009. 11. 30. 원고 대표이사인 N에게 9억 원을 지급하여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건 합의)을 승낙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나머지 양수금 각 3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문언에 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D가 아닌 G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G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는 G과 원고사이에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변제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일뿐이므로, 갑 제11호증(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G이 원고에게 G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잔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상호

판사손승우

판사방혜미